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73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이춘석・이학영・안호영

정준호 · 박희승 · 이연희

이원택 • 윤종군 • 신영대

임미애 · 김윤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륙을 기다리고 있던 항공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승객과 승무 원이 비상 탈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탈출 과정에 짐을 챙기려는 승객과 탈출하려는 승객이 엉켜 혼란스러웠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현행법은 승객의 협조의무로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흡연, 전자기기 사용 및 폭행·협박·위계행위 등을 금지하고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안내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 탈출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 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 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50조제2항제1호·제2호 신설).

법률 제 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 출을 방해하는 행위

제50조제2항 중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행위를 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한 사람
-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 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 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 를 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항공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①		
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		
	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① (생 략)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u>해당하는</u>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해하			
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		
	여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		

<신 설>

③ ~ ⑨ (생 략)

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한 사람

2. 제23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 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 는 사람에 대하여 업무를 방 해하는 행위 또는 폭행 등 신 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③ ~ ⑨ (현행과 같음)